

제284회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2017.12.27.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라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,
-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은

-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는
 - 제34조에서 2012.12.31.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규정에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임을 명시하여 모든 무허가 건물 대상이 아닌 위 법률에 따라 양성화 된 건물이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,
-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한 내용으로는

○ 제5조에서

-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은 현재, 토지 및 건물만 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그 외 재산에 대하여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,

○ 제6조에서

-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○ 제15조의2는

- 보호 가치가 있는 입목·죽 처분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처분을 제한하고자 신설한 내용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